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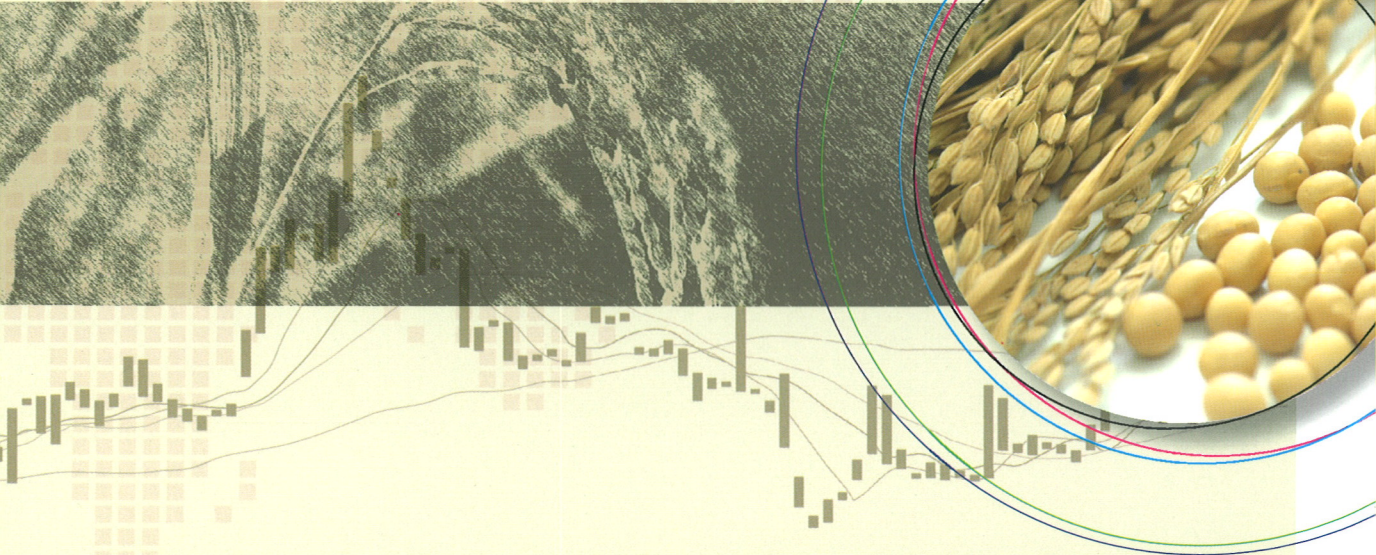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429-01

www.mifaff.go.kr

정부관리양곡처리요금표

2010. 4. 1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02793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429-01

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

2010. 4. 1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목 차

1. 양곡보관료, 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2
2. 포장재 보관료	5
3. 헨포장재 관리비	6
4. 양 곡 가 공 임	7
5. 포 장 임	9
6. 양곡가공보험료	10
7. 정부관리양곡 가공비용의 계산방법	10
8. 일 반 하 역 료	11
9. 톤 백 요 율	15
10. 항 만 하 역 료	16
11. 철 도 임	19
12. 트 렉 운 임	20
13. 해 송 운 임	24

1. 양곡보관료 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가.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단위 : 원/1일톤당)

	특 지					잡 지					을 지					야적	보관 보험료
	특급	1 급	2 급	3 급	등외	특급	1 급	2 급	3 급	등외	특급	1 급	2 급	3 급	등외		
쌀 현미	195.6	183.5	154.6	137.2	120.4	173.1	162.7	139.2	121.2	106.2	157.5	147.8	126.3	110.2	96.1	77.1	0.34
벼	151.5	142.0	122.1	106.0	92.7	133.9	125.8	107.9	93.4	81.8	121.8	114.3	98.1	85.1	74.7	59.4	0.26
보리쌀 눌린보리쌀 콩 옥수수 밀가루	156.1	147.1	125.8	109.2	96.3	138.1	129.9	111.1	96.9	84.7	125.8	117.8	100.9	88.0	77.0	61.5	0.26
겉보리 쌀보리 밀	113.5	106.6	91.1	79.5	69.6	100.5	94.1	80.7	69.9	61.3	91.4	85.3	73.1	63.7	55.6	44.3	0.18

나. 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단위 : 원/1일톤당)

	특 지	갑 지	을 지	보관 보험료
쌀 현미	220.2	195.2	177.4	0.34
벼	170.4	151.0	137.2	0.26
보리쌀 눌린보리쌀 콩 옥수수 밀가루	176.5	155.9	141.4	0.26
겉보리 쌀보리 밀	127.9	112.9	102.4	0.18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양곡보관료 및 보험료는 1일 톤당 요금이며, 보관일수의 계산은 정부관리양곡 보관도급계약서 제6조에 의한다.
- (2) 중량계산은 실양곡 중량으로 하되, kg까지로 한다.
- (3) 양곡보험료는 지역과 등급차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정부 소유 보관창고에 보관된 양곡에도 양곡보험료를 지급한다.
- (4)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특 지 : 특별시 및 광역시

 갑 지 : ① 시지역
 ② 주요항구도시 : 장항

 을 지 : 상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5)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6) 이 요율은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포장재 보관료

(단위 : 원/속)

구 분	단 량	보 관 료	
		가공공장분	야 적
P.P. 대	200매	12.3	6.1
지 대	200	6.8	3.5
P.E. 대(10kg들이)	700	8.2	4.2
P.E. 대(4kg들이)	1,000	4.9	2.4
현 P.P. 대	200	6.4	3.5
톤백 P.P. 대	20	18.8	9.3
현 톤백 P.P. 대	10	9.8	5.3

부 대 조 건

- (1)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 보관하는 포장재 보관료는 입고 다음날부터 사용을 위해 출고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이외사항 보관료에 대하여는 양곡 가공도급계약서 제13조에 규정한 포장재 보관료를 적용한다.
- (2) 이 요금은 1일당 요금이다.
- (3) 포장재중 불용품에 대하여는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
- (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5) 이 요율은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헌포장재 관리비

(단위 : 원/매)

구 분	단 위	관 리 비
헌 P·P 대	1매	13.7
헌 톤백 P·P 대	1매	81.3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관리비는 정부관리양곡 헌포장재 관리요령에 따라 품위별로 선별 분류 보관한 헌포장재에 적용하며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 지급하는 비용이다.(품위선별 보관을 하지 아니한 헌포장재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이 표의 관리비는 포장재의 등급이나 가용, 불용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 (3)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4) 이 요율은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양곡가공임

(단위 : 원/제품톤당)

가 공 구 분	제 품 곡 종	원 료 곡 종	가 공 임
정 상 가 공	쌀	벼	76,733
	쌀	현 미	68,059
	현 미	벼	41,954
	보 리 쌀	겉 보 리	155,228
	눌린보리쌀	겉 보 리	172,991
수분조절도정	보 리 쌀	쌀 보 리	115,222
	눌린보리쌀	쌀 보 리	147,176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가공임은 포장방법과 관계없이 지불하며, 원료의 하차료 및 입고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 이 표의 수분조절도정 가공임은 쌀보리를 원료로 하여 수분조절 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이 표의 가공임에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작업할증, 상여금, 퇴직금 및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5) 이 요율은 2010년 4월 1일 가공분부터 적용한다.

5. 포장 임

(단위 : 원/제품톤당)

포 장	규 격	포 장 임
P·P 대	40kg들이	4,749
P·P 대	20kg들이	12,873
지 대(봉합식)	20kg들이	12,676
P·E 대	10kg들이	13,689
P·E 대(외포장 포함)	4kg×5개들이	26,971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포장임은 포장 내용물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제품의 상차료 및 출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2) 이 표의 포장임에는 포장용지의 하차 및 입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이 표의 포장임에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작업할증, 퇴직금 및 식비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5) 이 요율은 2010년 4월 1일 포장분부터 적용한다.

6. 양곡가공보험료

(단위 : 원/제품톤당)

제 품	원 료	보 험 료
쌀	벼	521
쌀	현 미	584
현 미	벼	504
보리쌀, 눌린보리쌀	겉보리, 쌀보리	309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보험료는 원료의 입고후 제품출고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다만, 가공중지와 제품의 인수기일 경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관보험료를 적용한다.
- (2) 이 표의 보험료에는 정부양곡가공화재공제특약협정서 제1조 1호(공제 목적물의 범위)에 규정된 일체의 물품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 (3) 이 요율은 2010년 4월 1일 가공분부터 적용한다.

7. 정부관리양곡 가공비용의 계산방법

양곡관리관이 가공을 요청한 양곡에 대한 가공비용의 계산은 가공임, 포장임, 원료의 하차·입고료 및 제품의 출고·상차료를 각각 실양곡중량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실양곡중량을 kg단위까지 계산한다.

8. 일반하역료

1) 양 곡

(단위:원/톤)

항 목	요 율
1. 철 도 발 송 료	4,664
2. 철 도 도 착 료	4,763
3. 상 차 료	2,736
4. 하 차 료	2,481
5. 입 고 료	3,344
6. 출 고 료	3,344
7. 수 매 장 소 입 고 료	11,795
8. 수 매 직 송 상 차 료	7,782
9. 수매장소경비료(당일입고)	216
10. 선 별 료	2,481
11. 이 적 료	2,481
12. 이 송 료	
- 20m초과 50m까지	2,481
- 50m초과 20m마다	1,220
13. 검 근 료	2,481
14. 복 포 훈 증 소 독 비	694
15. 양곡중량 시험작업비	4,448
16. 호 송 료	2,587

2) 포장재

(단위:원/속)

항 목	P·P대 40kg들이	P·P대 20kg들이	지 대 20kg들이	P·E대 10kg들이	P·E대 4kg들이	P·P대 톤백들이
1. 철도발송료	150.7	85.0	193.7	139.3	95.2	134.1
2. 철도도착료	153.9	86.8	197.7	142.3	97.2	137.0
3. 상 차 료	87.9	49.6	113.1	81.3	55.5	78.2
4. 하 차 료	80.0	44.9	102.6	73.9	50.5	71.2
5. 입 고 료	107.5	60.6	138.2	99.4	68.0	95.7
6. 출 고 료	107.5	60.6	138.2	99.4	68.0	95.7
7. 이 적 료	80.0	44.9	102.6	73.9	50.5	71.2
8. 이 송 료						
- 20m초과 50m까지	80.0	44.9	102.6	73.9	50.5	71.2
- 50m초과 매 20m마다	39.2	22.1	50.5	36.4	24.9	34.9
9. 검 수 료	80.0	44.9	102.6	73.9	50.5	71.2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요율에는 일기불순,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할증과 노무자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2)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양곡중량으로 하며, kg까지로 한다.
- (3)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보관료』 항목의 단량을 기준으로 한다.
- (4) 철도수송시의 처리는 일관작업으로 한다. 다만, 철도발송시 호송인을 붙일 경우에는 별도로 이 표의 호송료를 적용한다.
- (5) 수매장소입고료는 수매장소의 보관창고로 입고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수매장소와 수매양곡을 보관한 창고가 200m이상의 거리에 위치할 경우에는 일반하역료를 적용한다.
- (6) 수매장소 입고료는 50m이내의 이송료가 포함되어 있다.
- (7) 수매장소 경비료는 수매장소와 보관창고의 거리에 관계없이 수매당 일 입고시키는 양곡과 관련하여 경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당일 수매물량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 (8) 수매직송상차료는 순회수매 또는 수매장소의 창고여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매물량을 타지역 창고로 직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9) 선별료와 이적료는 중복하여 지불하지 않는다.
- (10) 이송료는 인력운반임으로 20m초과 200m까지 이송작업할 때 적용하며, 20m이내의 이송료는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송거리 이내라도 양곡관리관(분임양곡관리관 포함)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운반구를 사용할 수 있다.
- (11) 양곡하역작업에서 발생하는 파손포대 개포장시 비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검사확인에 따라 별도로 실비 정산한다.(파손포대 개포장은 작업량의 0.3%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 (12) 양곡 훈증소독에 필요한 약품은 관급으로 한다.
- (13) 개포장 작업도중 보관된 양곡에 대하여는 실제 일수에 해당하는 보관료를 지급한다.
- (1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15) 이 요율은 2010년 4월 1일 처리지시분부터 적용한다.

9. 톤백요율

(단위:원/톤)

항 목	요 율
1. 톤백 매입료	4,551
2. 톤백 수매장소 입고료	4,425
3. 톤백 직송상차료	4,055
4. 톤백 상차료	1,765
5. 톤백 하차료	1,765
6. 톤백 입고료	3,063
7. 톤백 출고료	3,063

부 대 조 건

- (1) 부대조건은 『8. 일반하역료 1)양곡』을 적용하되, 톤백과 관련없는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이 요율은 2010년 4월 1일 처리지시분부터 적용한다.

10. 항만하역료

1) 양 곡

(단위:원/톤)

구 분	항 목	요 율
일 반 항	적 선 료	8,077
	양 육 료	7,739
인천, 보령, 장항, 군산, 대산, 평택, 목포항	적 선 료	8,302
	양 육 료	7,947
부산항 및 제주 전항	적 선 료	6,916
	양 육 료	6,371
공 통	경 비 료	198

2) 포 장 재

(단위:원/속)

항 목		P·P대 40kg들이	P·P대 20kg들이	지 대 20kg들이	P·E대 10kg들이	P·E대 4kg들이	P·P대 톤백들이
일 반 항	적선료	821	314	547	192	161	1,404
	양육료	785	299	524	186	155	1,342
인천,보령,장항,군산, 대산,평택,목포항	적선료	844	322	561	199	166	1,443
	양육료	806	308	537	190	158	1,378
부산항 및 제주전항	적선료	701	269	468	166	138	1,199
	양육료	647	247	432	153	127	1,106
공 통	경비료	20.4	7.7	13.6	4.7	4.0	35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요율에는 일기불순,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할증과 선적할증 및 근로자 퇴직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
- (2) 인천항의 경우 부잔교 이송작업시에는 톤당 1,460원을 가산적용하되, 벨트 컨베이어에 의한 이송작업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양곡중량으로 하며, kg까지로 한다.
- (4)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보관료』 항목의 단량을 기준으로 한다.
- (5) 적선 양육시의 처리는 일관작업으로 한다.
- (6) 각 단계별 작업기본거리는 30m로 한다.
- (7) 경비료는 양곡 또는 포장재를 적선, 양육과 관련하여 경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 1기(15일)당 적용하며, 양곡 또는 포장재를 직반출입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양곡 하역작업에서 발생하는 파손포대 개포장시 비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검사 확인에 의거 별도 실비 정산한다. (파손포대 개포장은 작업량의 0.3% 범위내에서 인정)

(9) 일반항 요율적용시 다음지역의 경우는 다음의 할증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강화군, 경북 울릉군, 전북 부안군 위도면, 옥구군 오식도, 전남 여천군 남면, 화정면 돌산면, 고흥군 봉래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군의면 제외) 지역내의 적선양육분 : 100%
- 전남 신안군 적선양육분 : 150%

(10)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다.

(11) 이 요율은 2010년 4월 1일 처리지시분부터 적용한다.

11. 철 도 입

한국철도공사 화물운송통지서의 표시액을 지불한다. 다만, 호송료는 별도 책정한 일반 하역료에 의하여 지급하고 한국철도공사 화물운송통지서의 표시액에서 제외한다.

12. 트럭운임

1) 국내양곡

(단위:원/톤)

거리대별	포 장 물	산 물
10km 까지	6,170	6,140
20km "	8,000	7,950
30km "	9,740	9,690
40km "	11,410	11,350
50km "	12,650	12,580
60km "	13,480	13,410
70km "	14,390	14,320
80km "	15,250	15,180
90km "	16,070	16,000
100km "	16,630	16,540
120km "	16,860	16,780
140km "	17,930	17,840
160km "	18,870	18,770
180km "	19,730	19,630
200km "	21,280	21,180
230km "	21,530	21,430
260km "	22,570	22,470
290km "	24,640	24,520
320km "	24,810	24,690
350km "	26,810	26,680
380km "	27,780	27,650
410km "	29,810	29,660
460km "	31,990	31,830
510km "	33,940	33,780
510km초과 매 50km마다	1,980	1,970

2) 수입양곡

(단위:원/톤)

거리대별	포 장 물	산 물
10km 까지	6,590	6,550
20km "	8,310	8,270
30km "	9,910	9,870
40km "	11,490	11,430
50km "	12,820	12,760
60km "	13,610	13,540
70km "	14,480	14,410
80km "	15,300	15,220
90km "	16,090	16,010
100km "	16,590	16,500
120km "	16,990	16,910
140km "	18,050	17,960
160km "	19,160	19,070
180km "	20,100	20,000
200km "	21,650	21,540
230km "	21,840	21,730
260km "	22,840	22,720
290km "	24,830	24,700
320km "	24,980	24,850
350km "	26,900	26,770
380km "	27,860	27,730
410km "	29,800	29,650
460km "	31,720	31,560
510km "	33,640	33,480
510km초과 매 50km마다	1,810	1,800

3) 포장재

(단위:원/속)

거리대별	P. P 대 40kg들이	P. P 대 20kg들이	지 대 20kg들이	P. E 대 10kg들이	P. E 대 4kg들이	P. P 대 톤백들이
10km 까지	272	153	349	250	171	242
20km "	352	198	452	325	222	313
30km "	429	241	550	396	271	382
40km "	501	283	645	464	317	446
50km "	556	314	715	514	351	495
60km "	593	335	763	548	375	528
70km "	633	357	814	585	400	563
80km "	671	378	862	621	425	597
90km "	707	398	908	654	447	629
100km "	731	412	941	676	462	651
120km "	741	418	954	686	469	660
140km "	789	445	1,014	729	498	702
160km "	829	468	1,066	767	524	738
180km "	867	489	1,116	802	548	772
200km "	936	528	1,203	865	592	833
230km "	947	534	1,217	876	599	843
260km "	992	560	1,277	917	628	883
290km "	1,083	612	1,393	1,002	685	964
320km "	1,092	616	1,403	1,009	690	972
350km "	1,179	665	1,516	1,091	745	1,049
380km "	1,221	689	1,570	1,130	773	1,087
410km "	1,311	739	1,686	1,212	829	1,167
460km "	1,406	794	1,809	1,301	889	1,251
510km "	1,492	842	1,919	1,380	944	1,328
510km초과 매 50km마다	88	49	113	80	55	77

부 대 조 건

- (1) 수입양곡 운송임은 입항지에서 최초 보관창고까지만 수입양곡 운송요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의 운송임은 국내양곡 운송요율을 적용한다.
- (2) 동일 거리내에서는 동일운임을 적용한다.
- (3) 유료도로 통행료 및 도선료는 실비를 지급하되, 왕복시 편도에 다화물을 수송할 경우에는 편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수송거리는 km까지 계산하되, 1km미만은 4사 5입한다. 다만, 전수송거리가 1km미만인 경우에는 1km로 계산한다.
- (5)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양곡중량으로 하고 kg까지로 한다. 다만 총 적재량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2톤으로 계산한다.
- (6) 우마차에 의한 양곡수송 운임은 본 운임에 준하되, 중량은 실적재량을 기준하며, 이 부대조건 4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7)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보관료』 항목의 단량을 기준으로 한다.
- (8)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이 처리한 분은 2.5%를 가산 지급한다.
- (9) 이 요율은 2010년 4월 1일 처리지시분 부터 적용한다.

12. 해송 운임

1) 양 곡

(단위:원, 3급품 톤/마일당)

거 리	요 율
1 ~ 20 마일	139.10
21 ~ 50	66.87
51 ~ 100	13.53
101 ~ 200	12.06
201 ~ 400	11.04
401 이상	8.04

2) 포장재

(단위:원/속)

거 리	P.P 대 40kg들이	P.P 대 20kg들이	지 대 20kg들이	P.E 대 10kg들이	P.E 대 4kg들이	P.P 대 톤백들이
1 ~ 20 마일	17.02	6.50	11.35	4.00	3.33	29.10
21 ~ 50	8.18	3.12	5.45	1.92	1.60	13.99
51 ~ 100	1.65	0.63	1.10	0.38	0.32	2.82
101 ~ 200	1.47	0.56	0.98	0.34	0.28	2.51
201 ~ 400	1.35	0.51	0.90	0.31	0.26	2.31
401 이상	0.98	0.37	0.65	0.23	0.19	1.68

부 대 조 건

- (1) 양곡의 운임계산방법은 해운항만청이 고시한 “내항 화물선 운임 규정”에 의하되 화물 등급상의 인수(因數)와 화물톤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화물 등급은 동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등급표(백미, 외미, 소맥 등은 52, 소맥분은 57, 대맥, 조미는 65, 두류는 84 등)에 의하되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곡종의 화물인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현미, 정맥, 조, 수수는 52, 압맥(압소맥), 밀쌀은 65, 옥수수는 84, 혼합곡은 55
 - 나) 화물톤수의 계산방법은 동규정 제13조에 의하며, 정미중량에 포장재료 중량을 가산 적용하되 포장재료 중량은 40kg들이 P.P대는 0.14kg, 20kg들이 P.P대는 0.08kg, 20kg들이 지대는 0.18kg, 톤백들이 P·P대는 2.5kg으로 한다.
- (2) 운항구간이 20마일 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20마일을 최저운임으로 한다.
- (3) 양곡의 적재중량은 kg까지로 한다.
- (4) 포장재 운임에는 화물등급 할증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 (5)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보관료』 항목의 단량을 기준으로 한다.
- (6) 항만청 고시에 의한 화물입항료의 기본료는 동 고시에 의거 실비 정산한다.

(7) 해송운임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기도 용진군 및 강화군의 해송분은 200%, 경상북도 울릉군 해송분은 50%, 전라북도 옥구군 오식도 및 전라남도 신안군 해송분은 150%, 여천군 남면, 화정면, 돌산면, 고흥군 봉래면, 완도군(군외면 제외), 진도군 조도면 지역의 해송분은 100%,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해송분은 200%,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면은 100%, 사랑면은 50%의 도서할증을 각각 작용하고 기타 지역은 동규정 제7조에 의한다.

(8)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9) 이 요율은 2010년 4월 1일 처리지시분 부터 적용한다.